

1.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기상청에서 운영하는 국립대구기상과학관 · 국립밀양기상과학관 · 국립충남기상과학관 · 국립여수해양기상과학관 · 국립전북기상과학관 · 국립충주기상과학관 및 국립기상박물관의 전문 역량과 행정 효율성을 제고하고 대국민 기상과학문화 확산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기상문화확산팀을 신설하려는 것임.

2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2026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

다. 합의 :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

2) 입법예고(2026. 9. 00. ~ 9. 00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제2항 중 “기상서비스정책과·국가기후데이터센터 및 기상융합서비스과를”을 “기상서비스정책과·국가기후데이터센터·기상융합서비스과 및 기상문화확산팀을”로, “서기관으로”를 “서기관으로, 기상문화확산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·서기관·공업사무관·기상사무관·시설사무관·전산사무관·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제13호 및 제13호의2를 각각 삭제하며, 같은 항 제18호 중 “과 및 센터”를 “과·센터 및 팀”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⑧ 기상문화확산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

1. 기상과학관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업무의 총괄
2. 기상박물관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
3. 기상과학관·박물관의 운영·발전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
4. 기상과학관·박물관 전시, 체험, 교육 프로그램의 기획 및 운영지원
5. 기상과학관·박물관 등의 기상문화확산 및 홍보에 관한 사항
6. 기상과학관·박물관의 관계기관 협력에 관한 사항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) ① 「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」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기상문화확산팀은 2029년 10월 13일까지 존속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기상문화확산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존속기한의 다음 날부터 기상문화확산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기상서비스정책과장이 분장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9조(기상서비스진흥국) ① (생략)	제9조(기상서비스진흥국) ① (현행과 같음)
② 기상서비스진흥국에 <u>기상서비스정책과 · 국가기후데이터센터 및 기상융합서비스과</u> 를 두되, 각 과장 및 센터장은 부이사관 ·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<u>서기관</u> 으로 보한다.	② ----- <u>기상서비스정책과 · 국가기후데이터센터 · 기상융합서비스과 및 기상문화확산팀</u> 을 ----- <u>서기관</u> 으로, 기상문화확산팀장은 <u>과학기술서기관 · 서기관 · 공업사무관 · 기상사무관 · 시설사무관 · 전산사무관 · 방송통신사무관</u> 또는 <u>행정사무관</u> 으로 ---.
③ 기상서비스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	③ -----.
1. ~ 12. (생략)	1. ~ 12. (현행과 같음)
13. <u>기상과학관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업무의 총괄</u>	<삭제>
13의2. <u>기상박물관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</u>	<삭제>
14. ~ 17. (생략)	14. ~ 17. (현행과 같음)
18. 그 밖에 국내 다른 <u>과 및 센터</u> 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	18. ----- <u>과 · 센터 및 팀</u> -----
④ · ⑤ 삭제	--

⑥ · ⑦ (생략)

<신설>

⑥ · ⑦ (현행과 같음)

⑧ 기상문화확산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

1. 기상과학관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업무의 총괄
2. 기상박물관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
3. 기상과학관·박물관의 운영·발전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
4. 기상과학관·박물관 전시, 체험, 교육 프로그램의 기획 및 운영지원
5. 기상과학관·박물관 등의 기상문화확산 및 홍보에 관한 사항
6. 기상과학관·박물관의 관계기관 협력에 관한 사항